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3. 10. 17.(화)

| 순서 | 검 토 안 건 | 제 안 |
|----|--------------------------------|-----|
| 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구청장 |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3. 9. 26.
- 회부일 : 2023. 10. 6. (의안번호 : 23-107)

2. 제안이유

마포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재정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신청, 정산의무 및 제외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른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 입법예고 : 2023. 7. 13. ~ 8. 2.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의 필요성/타당성

- 서울시는 2004년부터 대중교통 환승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을버스 업체의 손실분에 대해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산정하여 지원하여 왔음에도 마을버스 운송업체별 재정난과 인력난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서울시 예산만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여 자치구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자치구가 재정지원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 마을버스 업체는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 100%(시:구=92.5: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자치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의 조문 구성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후 정산보고 및 보조금 지원제외 사유 등이며, 안 제7조는 준용에 관한 내용임.

○ 마포구 관내 마을버스 운영현황

- 업체현황 : 11개 업체, 19개 노선, 110대 운행
- 운전기사 : 총 165명(주사무소가 서대문구인 연희교통 제외)

마을버스 현황

(2023. 7. 기준)

| 노선번호 | 기종점 | 업체명 | 배차간격 (운행횟수) | 종사자 수 | 운행 시간(분) | 운행 대수(대) |
|--------|-------------------------------|-------------|-------------------|----------|-------------|-------------|
| 마포01 | 산천동리버힐아파트~ 용문동시장 | 웅산교통 | 10~11분 (109회) | 16 | 30 | 5 |
| 마포02 | 청암대~청암대 | | 11분 (99회) | | 18 | 3 |
| 마포03 | 아현전철역~아현전철역 | 아현운수 | 8~12분 (122회) | 8 | 32 | 5 |
| 마포04 | 아현전철역~넓은마당 | | 2009.03.01부터 운행중단 | | | |
| 마포05 | 홍대입구역~홍대입구역 | 온누리 운수 | 15분 (70회) | 15 | 15 | 1 |
| 마포06 | 홍대입구역~영보웨딩홀 | | 8~12분 (140회) | | 55 | 10 |
| 마포07 | 양화진성지~ 신촌현대백화점 | 승마교통 | 7~10분 (110회) | 11 | 40 | 7 |
| 마포08 | 월드컵파크7단지~ 신촌전철역 | 성암운수 | 7~10분 (145회) | 19 | 75 | 17 |
| 마포09 | 망원유수지~신촌전철역 | 정암운수 | 5~7분 (173회) | 33 | 55 | 12 |
| 마포10 | 신촌전철역,그랜드마트 ~공덕전철역 | | 7~8분 (130회) | | 36 | 6 |
| 마포11 | 신촌전철역~마포전철역 | 신수동 마을버스 | 7~8분 (109회) | 23 | 30 | 4 |
| 마포12 | 신촌전철역~마포전철역 | | 7~8분 (109회) | | 30 | 5 |
| 마포17 | 공덕시장앞~공덕시장 | | 6~8분 (174회) | | 18 | 3 |
| 마포13 | 창전중앙하이츠아파트~ 신촌전철역 | 연희교통 | 22~24분 (36회) | - | 45 | 1 |
| 마포14 | 창전삼성아파트~ 신촌전철역 | | 16~18분 (54회) | | 20 | 2 |
| 마포15 | 월드컵파크7단지~ 홍대입구역 | 마포운수 | 9~13분 (98회) | 16 | 65 | 9 |
| 마포16 | 진선주택~홍대정문 | 합정운수 | 7~15분 (150회) | 17 | 40 | 8 |
| 마포18 | 상암월드컵파크6.7단지~ 상암월드컵파크6.7단지 | 미금운수 | 9~18분 (80회) | 7 | 40 | 6 |
| 마포18-1 | 상암월드컵파크6.7단지~ 상암월드컵파크6.7단지 | | 7~15분 (22회) | | 33 | 6 |

6. 종합 검토의견

-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을버스 이용자 수는 70% 정도밖에 회복되지 못하였고, 수년간의 요금 동결과 인건비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운송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업체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장기간 누적된 경영 악화로 인해 마을버스 운행 횟수 및 노선의 단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마을버스 적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85% 지원에서 자치구에서 지원조례가 있을 경우 서울시 7.5%, 자치구 7.5%를 매칭하는 「서울특별시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2023. 4. 17.)에 따라 마포구의 마을버스업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마을버스는 고지대,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그 마을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또는 노선 버스 정류소 사이를 운행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통수단이므로 마을버스 운행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됨.

- 특히 운수회사의 수익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며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환승제도가 도입되면서 환

승액 전액이 아닌 일부 손실분만을 보조받고 있어 늘어나는 적자 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또한 마을버스 수익성이 낮아지면 구 재정지원금은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업계의 자구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며,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 및 보조금 관리 방안도 해당 부서에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3. 6. 8.] [법률 제1855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8530호

제3조(재정지원 대상) ① 재정유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한다.

1.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② 재정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22., 2012. 7. 30., 2019. 5. 16., 2019. 9. 26.>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3.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
4.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버스의 고급화·다양화를 위해 저상버스 등의 도입으로 인한 구입비와 일반버스 구입비와의 차액
 - 나.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
 -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버스도색 등 버스시설 개선비용
 - 라.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및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열차단 필름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8558호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2년 단위로 마을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기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대상업체의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변동되는 사항(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제반 법·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비용 변동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정산 반영한다. <개정 2019.12.31>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
3. 기준운송원가 항목의 지출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3호의 기준운송원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
2.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
3. 차량보험료
4. 차량감가상각비
5. 차고지비
6. 정비비
7. 그 밖의 비용
8. 적정이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항목

③ 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 마을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및 재정지원 기준액(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운송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매년 초에 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구청장이 그 필요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